



# 대한한의사협회

(우)157-200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전화) 02-2657-5055,5069 /(팩스) 02-2657-5096

사무부총장 겸 교육국제학술국 국장:박영수 교육팀 팀장:김성진 담당:서혜진 E-mail:isom@chol.com

문서번호 대한의 제 783 호

시행일자 2015. 4. 8. ( 년)

경 유

수 신 각 시도지부장

참 조 사무국(처)장

|             |          |       |             |  |
|-------------|----------|-------|-------------|--|
| 선<br>람      |          |       | 지<br>시      |  |
| 접<br>수      | 일자<br>시각 | . : . | 결<br>재      |  |
|             | 번호       |       |             |  |
| 처<br>리<br>과 |          |       | 공<br>람      |  |
| 담<br>당<br>자 |          |       |             |  |
| 심<br>사<br>자 |          |       | 심<br>사<br>일 |  |

제 목 2015년도 보수교육 시행 관련 협조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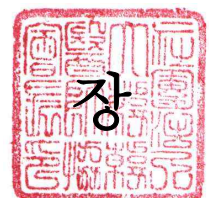
1. 한의학 발전을 위한 귀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절차에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내실화와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지부에서는 첨부 안내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소속 회원들이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2015년도 보수교육 시행 관련 협조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보수교육규정(2015.2.3. 개정) 1부. 끝.

대한한의사협회



【첨부 1】

## 2015년도 보수교육 시행 관련 협조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 □ 협조요청 사항

(1) 보수교육 프로그램 관련 요청사항

- 프로그램편성 시 다음 강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 주제         | 관련 내용                                        | 비고                                               |
|------------|----------------------------------------------|--------------------------------------------------|
| 의료사고<br>관련 | 의료사고의 법리 교육 및 대처요령                           |                                                  |
| 의료기기<br>관련 | - 혈액검사와 소변검사<br>- 심전도 및 영상진단(X-ray, CT, MRI) |                                                  |
| 기타         | 한방의료기관 현지조사, 임상강의, 한약품질 및 안전관리 등             | -한방의료기관현지조사:<br>심평원 조사기획부<br>이상목차장(02-2046-1702) |

(2) 교육 시간 및 내용의 내실화

- 교육시간 : 1시간(50분 기준)당 1평점.
- 교육 이외 안내 및 공지 : 교육시간외 공지 및 안내시간 별도 편성
  - ※ 분회로 교육 위임 시 특히 상기 내용 준수 당부 요청
  - ※ ‘보수교육’ 시간에 지부 및 분회 시책 안내 지양

(3) 등록비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 보수교육 등록비 부과
  - 회비 체납이 없는 회원의 등록비는 각 시도지부에서 예산 및 보수교육소요비용에 따라 책정하여 부과하되, 미등록회원 및 2년 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1점당 4만원 부과
    - 예) 지부에서 4점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미등록회원 및 회비체납회원의 보수교육비는 16만원, 회비 납부회원의 경우는 지부에서 책정

- 보수교육 예산 별도 관리
  - 등록비 부과에 따른 수입은 보수교육 사업목적비로 별도 관리하고, 보수교육 사업에 한정하여 지출 요망(추후 복지부 감사 대상임)

#### 《보수교육비 등록비 부과 관련 복지부 업무지침》

- 보수교육을 통해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거나 협회비 체납을 이유로 의료법상의 보수교육을 거부할 수는 없음. 다만 미등록회원 및 미납회원에 대하여 보수교육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에 근거하여 간접비를 추가 부과 가능(2015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

#### 《등록비 부과 관련 규정》

- 정관시행세칙 제25조 (보수교육) 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에게 보수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9조 제2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2012. 3. 11 개정)
- 보수교육규정

**제10조(등록비)** ①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재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2002.1.12.개정)

② 등록비는 1점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금액 및 부과 주체 등은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다.(2012.4.7.개정)

③ 정관시행세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제2항의 등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체납회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4.7.신설)

#### (4) 보수교육 출결관리 철저 협조

- 출결시스템(2013년도 각 사무국으로 배포)을 통한 등록 실시
  - 출결의 투명성 및 참석시간 체크

## □ 보수교육 관련 유의사항

### ○ 보수교육대상자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이 아닌 모든 한의사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인 경우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 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수교육 대상이 되며, 유예기간 동안의 보수교육 점수를 보충하여야 함
- ※ 건강상 이유, 고령이나 기타 사유로 휴폐업을 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 ※ 장기적인 보수교육 유예 : 장기간 진료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매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추후 진료를 시작하면 유예기간 중의 보수교육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 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하면 보수교육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면제대상

- 전공의
- 한의과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의학대학원 등 기타 대학원은 해당 안 됨)
- 의료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면허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와 공문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 필요.)

#### · 유예대상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면제 및 유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서식 다운로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보수교육 규정 별지 제5호의 서식(대한한 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http://www.akom.org))의 교육마당> 교육공지 (2012년도 이후 면제·유예신청서))

## - 증빙서류

### 《면제자》

- 전공의→ 재직증명서
-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재학증명서 or 성적증명서 or 교육비납입증명서
- 신규 면허취득자→ 면허증 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권해석 결과(공문 등)

※ 신규면허취득자: 면허 취득한 해가 보수교육 면제되며, 다음해부터 이수 해야함

### 《유예자》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유권해석 결과(공문 등)

## - 제출처 및 기한

- 면제 및 유예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 중 상반기까지(부득이 하반기에 대상될 경우 11월말까지) 면제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각 시도지부로 제출(→ 시도지부는 중앙회로 제출)하거나,
- 중앙회로 직접 신청할 경우
  - i) 본회 사이버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의 면제/유예> 면제유예신청에서 제출 및 신청 가능
  - ii) 보수교육 담당부서(교육팀)로 제출 : 팩스 02-2657-5096 또는 이메일 [isom@chol.com](mailto:isom@chol.com) / 문의전화 : 02-2657-5055, 5069

## - 면제/유예 신청 관련 유의점

- 유예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보수교육
  - ☞ 의료활동 재개 등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유예기간 중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예) 2014년도에 유예신청하고, 2015년도에 의료활동 시작할 경우의 보수교육 이수점수  
→ 2년간(2014-15년)의 점수인 16점을 이수하여야함

- 면제나 유예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해마다 증빙서류와 함께 면제나 유예신청을 해야 함.

예) 대학원재학생 : 재학년도별 매년 재학증명서 제출, 휴학년도 면제 예외

#### ○ 보수교육 평점 및 연 상한점 안내

- 각 보수교육의 승인 평점 및 연 상한점(시도지부 4점)에 유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 요망(세부평점내역 : 보수교육규정 별표 참조)

#### ○ 보수교육 정보확인 : 협회 홈페이지 및 AKOM보수교육센터

- 평점내역 확인
  - AKOM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로그인>나의보수교육>보수교육이수현황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http://www.akom.org))로그인 > My page > 보수교육정보 보기
- 교육 공지 및 연간 계획서 등 교육일정 확인
  -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http://www.akom.org))로그인 > 교육마당

#### □ 기타

- 보수교육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 보 수 교 육 규 정

|       |     |     |    |
|-------|-----|-----|----|
| 1986년 | 2월  | 14일 | 제정 |
| 1989년 | 7월  | 7일  | 개정 |
| 1993년 | 2월  | 17일 | 개정 |
| 1995년 | 5월  | 22일 | 개정 |
| 1998년 | 4월  | 26일 | 개정 |
| 1999년 | 12월 | 7일  | 개정 |
| 2000년 | 12월 | 2일  | 개정 |
| 2002년 | 1월  | 12일 | 개정 |
| 2008년 | 6월  | 14일 | 개정 |
| 2009년 | 11월 | 21일 | 개정 |
| 2011년 | 1월  | 8일  | 개정 |
| 2012년 | 4월  | 7일  | 개정 |
| 2012년 | 6월  | 23일 | 개정 |
| 2013년 | 10월 | 15일 | 개정 |
| 2014년 | 3월  | 2일  | 개정 |
| 2014년 | 9월  | 21일 | 개정 |
| 2014년 | 10월 | 21일 | 개정 |
| 2015년 | 2월  | 3일  | 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대한한 의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한의사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6.23. 개정)

**제2조(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본회회원으로 한다.(2012.6.23. 개정)

**제3조(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2012.6.23. 개정)

1. 전공의
  2. 한의과대학의 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2014.3.2. 개정)
  3. 의료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3월말 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 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지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부는 이를 1개월 이내에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3.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동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의 보수 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2.6.23. 신설)

**제4조 (보수교육기관)** ①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위임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의 중앙회가 주관·실시 한 것으로 본다. (2012.6.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012.6.23. 신설)

1. 각 시도지부
2.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 학회(이하 ‘분과학회’라 한다)
3. 기타 의료법시행규칙 및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012.6.23. 제목변경]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 ① 보수교육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연 8점 이상 받은 교육점수는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아니 한다.(2013.10.15. 단서 신설)

② 제1항의 보수교육 내용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추후 평가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교육의 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6조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 ① 보수교육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1.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2. 필요예산 확보
3.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4.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제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7조 (강사의 자격)** ① 보수교육 강사는 본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대학원 및 수련한방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한의사(의사)로서 5년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위원회는 한의사가 아닌 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

[2012.6.23. 제목개정]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2.1.12.개정) (2012.6.23. 개정)

②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 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교육실시 7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연간계획은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보수교육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승인한다.

④ 승인된 연간 보수교육계획은 중앙회가 보수교육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9조 (교육계획 조정 및 협조)** 각 시, 도지부장은 제8조1항의 계획수립에 앞서 보수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회원의 교육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일 지역내 교육기관간에 협의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육 기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일자의 중복 여부
2. 교육과목
3. 교육시간 및 평점
4. 교육장소

[2012.6.23. 제목개정]

**제10조(등록비)** ①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재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2002.1.12.개정)

- ② 등록비는 1점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금액 및 부과 주체 등은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다.(2012.4.7.개정)
  - ③ 정관시행세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제2항의 등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체납회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4.7.신설)
  - ④ 중앙회는 시도지부 및 기타 보수교육 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등록비의 일정 금액을 중앙회 교육관리비용으로 송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2012.6.23. 개정)
  - ⑤ (삭제) (2012.6.23. 개정)
- [2012.6.23. 제목개정]

- 제11조 (결과보고 등)** ①각 시, 도지부장 및 교육 기관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이수자명단 제외)를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 ② 각 교육기관은 의료법 제25조의 이행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자명단을 3일 이내(휴일이 포함된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에 중앙회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면허신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요청 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012.6.23. 개정)
  -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자 및 논문에 대한 평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말까지 각 시도지부장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 ④ 각 시도지부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회원이 당해 연도중에 보수교육을 받고 발급 받은 보수교육 평점카드를 회원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말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에서 지정한 기관은 파일로 보고할 수 있다. 단, 자동출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데이터 등으로 평점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2012.6.23. 개정)
  - ⑤ 삭제 (2012.6.23. 개정)
- [2012.6.23. 제목개정]

**제12조 (등록대장 및 평점 카드 교부)**

- ① 교육기관은 교육 시행에 있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12.6.23. 개정)
  - ②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 ③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평점카드를 대체하여 별도의 참석 증빙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 [2012.6.23. 제목개정]

**제13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가급적 실제 임상에 필요한 의료기술이나 최신 한의학정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그외에 한의사에게 필요한 일반강좌나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4조 (평점)** ①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시도지부는 4평점중 1평점을 분회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14.3.2. 개정)

③ 보수교육강사에게는 1시간에 2평점을 인정한다.

④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참가한 경우의 평점은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중앙회에서 국내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⑤ 논문평점은 정기간행물로 학술지 및 회지 등의 게재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저의 경우는 저자 모두에게 인정하며 소속지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재된 학회지의 표지 및 목차사본

⑥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 평점인정은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다. (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15조(보수교육위원회)** 정관 제6조 제3호 및 정관시행세칙 제38조 위원회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위원회를 둔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6조(지도감독)** 중앙회는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평가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2012.6.23. 제목개정]

**제17조(행정사항)** 중앙회는 교육기관장의 보수교육 결과보고에 따라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행정조치토록 한다. (2012.6.23.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18조(교육계획 공고)**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사전에 한의신문에 공고한다.

[2012.6.23. 제목개정]

**제19조(추가교육)** ① 중앙회는 보수교육미필자에 대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미필자는 미필연도의 점수를 포함하여 연8점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3.10.15. 개정)

③ 각 시도지부는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20조(기록관리)** ① 교육기관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2.6.23. 개정)

② 보수교육의 모든 기록은 소정서식에 의하여 면허번호, 성명, 소속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유예신청한 경우 및 일정 기간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2012.6.23. 신설)

[2012.6.23. 제목개정]

**제21조(벌칙)** ① 보수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경고, 업무정지, 인증취소 등의 벌칙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와 인증취소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4.9.21. 개정)

1. 승인을 받지 않은 평점 발급(2014.9.21. 개정)

2. 승인된 보수교육과 실제 교육내용이 상이하거나,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 (2014.9.21. 개정)

3. 보수교육 실시 관련 허위보고(2014.9.21. 개정)

4.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보수교육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2014.9.21. 개정)

[2012.6.23. 제목개정]

**제22조(보칙)** 이 규정의 개정은 보수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6.23. 제목개정]

## 부 칙 (1)

1. 본 규정은 대한한 의사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89년 7월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3)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4)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5년 5월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5)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6)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199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7)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교육 평점 8점이상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8)(2002.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2년 1월 12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008.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8년 6월 14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2009.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2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20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2012.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제14조 관련)

| 교육종목                                                                                                                                                                                                                                                                                                                     | 교육기관           | 평점        | 연상한점수                    |
|--------------------------------------------------------------------------------------------------------------------------------------------------------------------------------------------------------------------------------------------------------------------------------------------------------------------------|----------------|-----------|--------------------------|
| 전국학술대회<br>국제학술대회                                                                                                                                                                                                                                                                                                         | 중앙회/<br>대한한의학회 | 4점        | 4점                       |
| 지부교육                                                                                                                                                                                                                                                                                                                     | 시도지부           | 1시간당 / 1점 | 4점                       |
| 학술세미나                                                                                                                                                                                                                                                                                                                    | 대한한의학회         | 1시간당 / 1점 | 2점                       |
| 국제학술대회                                                                                                                                                                                                                                                                                                                   | 분과학회           | 4점        | 3점 또는 4점                 |
| 분과학회별 학술대회                                                                                                                                                                                                                                                                                                               |                | 1일당 / 2점  |                          |
| 보수교육 강의                                                                                                                                                                                                                                                                                                                  |                | 1시간당 / 2점 | 4점                       |
| 논문게재                                                                                                                                                                                                                                                                                                                     |                | 1편당 / 2점  | 3점                       |
| 사이버 보수교육                                                                                                                                                                                                                                                                                                                 |                | 1강좌 / 1점  | 4점<br>(2013. 10. 15. 개정) |
| 기타 보수 교육위원회가<br>인정하는 교육                                                                                                                                                                                                                                                                                                  |                |           |                          |
|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 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br>2. 분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분과학회인 경우는 3평점, 상이한 분과학회인 경우는 4평점의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br>3.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br>4. 사이버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이버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2014.3.2. 신설) |                |           |                          |

〈별지 제1호 서식〉

# 補修教育實施計劃書

1. 실시 기관명 :  
 2. 교육 실시일 :           년           월           일  
 3. 장 소 :  
 4. 회 망 평 점 :           평점  
 5. 참석예상인원 :           명  
 6. 교 육 종 목 :  
 7. 세부교육내용

| 월 일 | (시시 ~ 간시) | 교 육 제 목 | 강 사 명 | 희 망 평 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시간        |         |       | 평점      |     |

8. 등록비 징수 여부 (○, ×) :  
9. 등 록 비 :  
10. 소 요 예 산

| 항 목 | 소 요 예 산 (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별지 제2호 서식>

## ( )年度 補修教育實施結果 報告書

---

1. 실시 기관명 :
2. 교육 실시일 :        년        월        일
3. 장        소 :
4. 이 수 평 점 :        평점
5. 참 석 인 원 :        명
6. 교 육 중 목 :
7. 세부교육내용

| 월    일 | 시    간<br>(    시 ~    시) | 교    육    제    목 | 강   사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시간                       |                  |           |        |

※ 참석자 명단을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거 별첨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 評點履修內譯表

[illegible]

< 별지 제4호 서식 >

## (        )년도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보고기관 :

| 번호 | 성명 | 면허번호 | 근무처 |    | 면제사유(근거서류 첨부) |
|----|----|------|-----|----|---------------|
|    |    |      | 명칭  | 주소 |               |
|    |    |      |     |    |               |

- 면제사유 : 1. 전공의  
2. 한의과대학원 재학생  
3.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5호 서식>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 청 자   | 성명                                                                                                                                                    |     | 면허번호    |
|         | 직종<br>[ ] 한의사                                                                                                                                         |     |         |
| 신 청 사 유 |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     |         |
|         |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br>[ ] 1. 전공의<br>[ ] 2. 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br>[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br>[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br>[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br>[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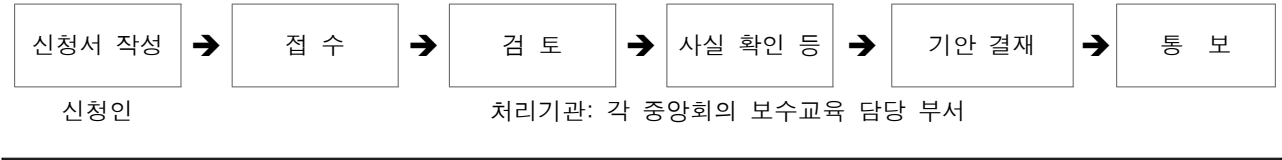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회장 귀하

|         |                                 |
|---------|---------------------------------|
| 첨 부 서 류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보수교육 [ ] 면제  
[ ] 유예 확인서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9항에 따라 귀하는 보수교육 면제  
·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인

##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

면허번호:

직 종 :

보수교육 이수내역:

귀하는                    년도 의료인 보수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 補修教育 登録臺帳

教育日字 \_\_\_\_\_

教育機關

[illegible]

## 補修教育評點카드

(教育機關保管用)

NO. \_\_\_\_\_ 200 . . . .

1. 姓 名 \_\_\_\_\_ 2. 免許番號 \_\_\_\_\_  
3. 支部/分會 \_\_\_\_\_ 4. 教育種類 \_\_\_\_\_  
5. 評 點 \_\_\_\_\_

위 사실을 確認함

大韓韓醫師協會

教育機關

(印)

## 補修教育評點카드

(履修者保管用)

NO. \_\_\_\_\_ 200 . . . .

1. 姓 名 \_\_\_\_\_ 2. 면허번호 \_\_\_\_\_  
3. 支部/分會 \_\_\_\_\_ 5. 교육종류 \_\_\_\_\_  
6. 評 點 \_\_\_\_\_

위 사실을 確認함

大韓韓醫師協會

教育機關

(印)

( 255mm×90mm )

## 教育機關保管用

※ 5항의 교육종류란에는 전국학술대회, 보수교육, 학술세미나, 월례연구모임등으로 구분 기재할 것.

| 교육종목                   | 교육기관            | 평점        | 년상한점수    |
|------------------------|-----------------|-----------|----------|
| 전국학술대회<br>국제학술대회       | 중앙회 /<br>대한한의학회 | 4점        | 4점       |
| 지부교육                   | 시도지부            | 1시간당 / 1점 | 4점       |
| 학술세미나                  | 대한한의학회          | 1시간당 / 1점 | 2점       |
| 국제학술대회                 | 분과학회            | 4점        | 3점 또는 4점 |
| 분과학회별 학술대회             |                 | 1일당 / 2점  |          |
| 보수교육 강의                |                 | 1시간당 / 2점 | 4점       |
| 논문게재                   |                 | 1편당 / 2점  | 3점       |
| 사이버 보수교육               |                 | 1강좌 / 1점  | 4점       |
|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br>인정하는 사항 |                 |           |          |

## 履修者保管用

※ 모든 보수교육평점은 電算處理되므로 人的事項은 정확히  
明記하여 주십시오.

(        )년도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보고기관 :

| ①면허번호 | ②성명 | 근무처 |     | 평점내역  |       |       |    | ⑨교육이수 | ⑩교육미이수 |
|-------|-----|-----|-----|-------|-------|-------|----|-------|--------|
|       |     | ③명칭 | ④주소 | ⑤이수평점 | ⑥교육담당 | ⑦논문게재 | ⑧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 보고서는 전산처리 자료로 사용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내용은 한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면허번호가 틀리면 [0점] 처리됩니다.